

부산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53016(본소), 2021나53030(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53016(본소), 2021나53030(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소563427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석중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2. 3. 2.

판결 선고 2022. 4. 6.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소563427(본소), 2021가소3403(반소)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을 "2021. 1. 20.부터 부산 영도구 C 답 164m²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12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943,8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1. 1. 20.부터 부산 영도구 C 답 164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5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2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9,926,799원 및 그중 15,801,224원에 대하여는 2015. 2. 6.부터, 12,156,475원에 대하여는 2021. 1. 6.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969,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정정 및 청구원인 보충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3,625,5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일부(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상수도 관리비 등 청구)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상수도 관리비 등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 아래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제1불법행위'라 한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5고약5186호)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원고는 휴게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의 친누나이다.

가. 주거침입

1) 원고는 부산 영도구 D 피고의 주거지 인근 E 도로확장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사용하는 수도의 전원스위치를 조작하여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2014. 10. 27. 11:41경 위 피고의 주거지의 수도전원스위치가 설치된 다용도실에 들어가기 위해 피고의 허락도 없이 그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다용도실 창문을 넘고 들어가 피고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30. 10:38경 전'1)'항과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허락도 없이 피고의 주거지 다용도실에 침입하였다.

3) 원고는 2014. 11. 4. 10:28경 전'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허락도 없이 피고의 주거지 담을 넘어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고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수색

1) 원고는 위 가.의 1)항과 같이 피고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진행 중인 피고의 민사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찾기 위해 그 주거지를 수색하였다.

2) 원고는 위 가.의 2)항과 같이 피고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3) 원고는 위 가.의 3)항과 같이 피고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9. 아래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제2불법행위'라 한다)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21고정74)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원고는 피고(64세)와 남매지간이고, 피해자 F(여, 58세)은 피고의 아내이다.

1. 재물손괴

원고는 2020. 5. 27. 10:17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와 피해자 F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원고가 운영할 G 매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던 피고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재 구조물 지붕 뼈대 2개를 톱으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원고는 2020. 5. 27. 1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임의로 그곳에 알루미늄 재질의 G 매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와 피해자 F의 주거지 마당에까지 들어가 피고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반소 청구에 관한 주장 요지

가. 제1, 2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1) 원고는 앞서 본 제1불법행위와 같이 피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 주거지를 수색하였고, 제2불법행위와 같이 피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고 소유의 철재 구조물을 손괴하였다.
- 2) 위와 같은 원고의 불법행위들로 인하여 피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손괴된 철재 구조물의 원상회복 비용으로 769,1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원상회복 비용 상당 손해액 769,100원과 위자료 1,200,000원 합계 1,96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수도 관리비 등 청구

-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피고가 2013. 4. 5. 이 사건 주택에 이사를 오면서 인근 주택으로 이주하였는데, 2013. 4.경 이 사건 주택의 간이 상수도 시설에 상수도 시설을 추가하여 원고가 이주한 주택까지 상수도 시설을 연장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 2) 피고는 위 간이 상수도 시설을 현재까지 관리하며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위 시설의 관리비용은

전기료 월 25,000원, 관리비 월 25,000원, 인건비 월 200,000원 합계 월 250,000원 상당이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12,156,475원[= 상수도 관리비 등 합계 24,312,950원(2013. 4. 6.부터 2021. 1. 5.까지의 상수도 관리비 18,600,000원 + 계량기 설치비 242,000원 + 전기료 3,030,090원 + 비품구입비 2,440,860원) × 원고 부담 부분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주거를 수색하고 피고의 재물을 손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의 제1불법행위는 2014. 10. 27.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사이에 발생하였고,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5. 5. 13.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원고와 피고가 남매지간으로서 오랜 기간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는 2015. 6. 11.경 위 약식명령 등본을 발급받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는 제1불법행위일 직후 또는 늦어도 2015. 6. 11.경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21. 4. 14.에서야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 보충서를 통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는 제2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상회복비용

피고는 제2불법행위로 인한 철재 구조물의 원상회복비용이 769,1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로 을 제4호증(견적서)을 제출하였으나, 위 견적서의 작성 시기 및 경위, 범죄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구체적인 손괴행위와 위 견적서에 기재된 품목 및 보수공사 내용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제2불법행위로 인한 원상회복비용이 769,1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원고의 제2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제2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2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 보충서 송달 다음날인 2021. 4. 1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수도 관리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간이 상수도 시설을 연장 또는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계량기 설치비 242,000원, 전기료 3,030,090원, 비품구입비 2,440,860원은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상수도 관리비용이 월 25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원고(반소피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부분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 바꿈직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참조) 위 주문 제1의 나.항을 "2021. 1. 20.부터 부산 영도구 C 답 164m²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12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일예

판사서호원

판사이은명